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규정	문서번호	3-1-33		
		제정일	2015. 09. 01.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1/4	관리 부서	성과관리 센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고 한다.)의 교육, 연구, 조직운영, 시설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교육 수요자 측면에서의 만족도 조사를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향후 개선방안 도출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대학교육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조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수요자’라 함은 교육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학부모, 산업체 및 지역사회 등 본 대학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말한다.
2. ‘교육 만족도’라 함은 유·무형의 각종 교육 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말한다.
3.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라 함은 대학 본부 지원과 관리에 의해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의 유·무형의 각종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분석, 평가 및 개선활동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관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성과관리센터에서 주관한다. 다만, 특정 범위에 국한된 조사의 경우 관련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다.

제5조(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위원회) ①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성과관리센터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성과관리센터장으로 한다.
2.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본 대학 교직원과 학생대표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2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대학 전체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기본계획 심의
2.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설문 문항 자문
3. 교육 수요자 만족도 분석 결과 심의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른 개선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자문 등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규정	문서번호	3-1-33		
		제정일	2015. 09. 01.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2/4	관리 부서	성과관리 센터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3. 조사 설계 및 일정
4. 조사 영역
5. 기타

② 교육 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실시 및 조사 방법) ①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 실시한다.

③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의 선정 및 조사 방법 특성 상 유관부처 및 부속·부설기관과 별도 협력하여 실시한다.

제8조(조사 영역) ①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대상별 조사 영역은 다음과 같다.(2020.12.31.개정)

대상	조사 영역
재학생	- 교육 - 학생지원 - 교육환경 - 행정 서비스 - 대학(SWCN)브랜드 확립 - 대학 발전계획 및 전반적 만족도
졸업생	- 교육과정 - 교수진 - 학사 운영 및 행정 서비스 - 학생지원 - 교육환경 - 대학(SWCN) 브랜드 확립 - 대학 발전 계획
교원	- 발전계획 - 업무지원 - 교원평가 및 지원 - 조직구조 - 전반적 만족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규정	문서번호	3-1-33		
		제정일	2015. 09. 01.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3/4	관리 부서	성과관리 센터

대상	조사 영역
직원	- 발전계획 - 업무지원 - 직원평가 및 지원 - 직무 - 조직구조 - 전반적 만족도
학부모	- 교육과정 - 학사운영 - 교육성과 - 교육환경 - 학생지원 - 대학(SWCN)브랜드 확립 - 대학 발전계획 - 전반적 만족도
산업체	- 교육목표 성취도 - 핵심역량 배양도 - 교육 및 산학협력 만족도 - 졸업생 만족도 - 산업체 의견
지역사회	- 사회공헌(협력) 프로그램 - 지역사회 기여도 - 대학이미지 및 발전가능성 - 지역공감교육 및 지역공헌 활동 - 기타

②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조사 영역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결과보고) 주관 부서는 교육 수요자 만족도 결과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내 구성원과 공유한다.

제10조(결과활용 및 이행점검) ① 주관부서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처 및 부속·부설기관에 개선내용 제출을 요청하고, 부처 및 부속·부설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② 부처 및 부속·부설기관은 개선계획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만족도 개선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 수요자 조사 결과의 활용, 이행 점검 등은 위원회를 통해 점검, 공유해야 한다.

④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대학 발전계획 및 대학 운영 개선의 기초자료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규정	문서번호	3-1-33		
		제정일	2015. 09. 01.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4/4	관리 부서	성과관리 센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조사 결과 및 개선노력은 홈페이지 및 정보 공유 시스템 등을 통해 알리도록 노력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